

의안번호	제 770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1월 9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770

제출연월일 : 2018년 1월 9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결혼·출산·양육 등 포괄적 지원을 위한 조례명 개정
- 저출산의 주된 요인인 비혼·만혼 방지를 위한 적령기 결혼 장려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조례명 변경
 - 현행 : 「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
 - 변경 : 「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
- '다자녀 우대카드' 명칭 변경(안 제2조 제5호, 제11조 제1항)
 - (현행)'다자녀 우대카드' → (변경)'아이사랑 우대카드'
- '출산장려 종합계획' 용어 변경(안 제5조 제1항~제2항, 제6조)
 - (현행)'출산장려 종합계획' → (변경)'저출산 대응 종합계획'
- 저출산대책위원회 성별비율 관련 문구 수정(안 제15조 제3항)
- 적령기 결혼장려에 관한 지원근거 신설
 - 안 제5조(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 제2항 제7호
 - 안 제7조(지원대상) 제1항 제4호
 - 안 제13조(민간단체의 지원) 제1항 제4호
 - 안 제14조(포상) 제3호
 - 안 제16조(위원회의 기능) 제1호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결혼장려 및 출산·양육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다자녀 우대카드”를 “아이사랑 우대카드”라 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출산장려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”을 “(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출산장려종합계획”을 “저출산 대응 종합계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적령기 결혼장려를 위한 시책

제6조 중 “출산장려 종합계획”을 “저출산 대응 종합계획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적령기 결혼장려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

제11조의 제목“(다자녀 우대 카드발급)”을 “(아이사랑 우대 카드발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두자녀 이상”을 “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다자녀 우대카드”를 “아이사랑 우대카드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4호를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적령기 결혼장려에 관한 사업

제14조제3호 중 “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”을 “소속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저출산 대응과 적령기 결혼 분위기 조성”으로 한다.

제15조 제3항 중 “도지사가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의 과 반수는 여성으로 한다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”로 한다.

제16조제1호 중 “자녀의 출산”을 “적령기 결혼 및 자녀의 출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(제명) 충청북도 <u>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(생략) 1.~4.(생략) 5. <u>다자녀</u> 우대카드라 함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가 농협을 통하여 발급하는 아이사랑 보너스 카드를 말한다.</p> <p>제5조(<u>출산장려종합계획</u>의 수립·시행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출산장려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출산장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출산장려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.~6.(생략) <신설> 7. 그 밖에 출산장려지원 시책</p> <p>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·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</p>	<p>(제명) 충청북도 <u>결혼장려 및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~4.(현행과 같음) 5. <u>아이사랑</u> 우대카드라 함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 라 한다)가 농협을 통하여 발급하는 아이사랑 보너스 카드를 말한다.</p> <p>제5조(<u>저출산 대응 종합계획</u>의 수립·시행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 라 한다)는 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.~6.(현행과 같음) 7. <u>적령기 결혼장려를 위한 시책</u> 8. (기존 제7호와 같음)</p> <p>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·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지원 대상) ①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7조(지원 대상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적령기 결혼장려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</u></p> <p>5. (기존 제4호와 같음)</p>
<p>제11조(다자녀 우대 카드발급) ① <u>도지사는 두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다자녀 우대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할인</u></p>	<p>제11조(아이사랑 우대 카드발급) ① <u>도지사는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자녀우대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아이사랑 우대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할인</u></p>
<p>제13조(민간단체의 지원) ①(생략)</p> <p>1.~3.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4. <u>그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</u></p>	<p>제13조(민간단체의 지원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적령기 결혼장려에 관한 사업</u></p> <p>5. (기존 제4호와 같음)</p>
<p>제14조(포상) (생략)</p> <p>1.~2.(생략)</p> <p>3. <u>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</u></p>	<p>제14조(포상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소속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저출산 대응과 적령기 결혼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사업체</u></p>
<p>제1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~②(생략)</p> <p>③위원은 <u>도의회 의원, 대학교 교수, 시민단체 대표자, 관련 전문가 등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원</u>의 과 반수는 여성으로 한다.</p>	<p>제1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~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위원은 <u>도의회 의원, 대학교 교수, 시민단체 대표자, 관련 전문가 등 저출산 대책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</u></p>
<p>제16조(위원회의 기능) (생략)</p> <p>1. <u>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사항</u></p>	<p>제16조(위원회의 기능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적령기 결혼 및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사항</u>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20조(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) ①정부는 저출산·고령사회 중·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,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4. 그 밖에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적령기 결혼을 장려하고 도내 중소(중견)기업에 대한 장기근로를 유도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운영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 운영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

3. 관련조문

- 안 제7조(지원대상) ①도지사는 출산의 장려와 양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4. 적령기 결혼장려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중소(중견)기업 근로자 400명

나. 추 계 결 과 : '18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4,400백만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21%, 시군 21%, 기업 29%, 근로자 29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
세 출	14,400	2,880	2,880	2,880	2,880	2,880
행 복 결 혼 공 제 지원금	14,400	2,880	2,880	2,880	2,880	2,880

6. 작성자 :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김두환